

의안번호	제 337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(본청)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7월 4일

# 충청북도(본청)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

의 안 번 호	337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7월 4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도청사 주차장 내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『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11조3 제2항에 따라,
-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(한국전력공사)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  
※ 한전 '23년 공용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 최종 선정('23.6.)

## 2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'23. 7. ~ 12. ※ 사업비 : 한전 전액부담
- 설치장소 : 청사 민원인 주차장 내 2면
- 사업량 : 100kW(콤보 1) 급속충전기 2대(기) 구축
- 수행기관 :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※ 구축·설비 총괄 운영
- 주요내용 :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충전소 부지제공

## 3. 참고사항

- '23년 공용전기차 구축사업 수요조사(한전 → 도) : 4. 28.  
- 충전소 설치 관련 업무협의(주변여건, 전력설비 등) : 4 ~ 6월
- '23년 공용전기차 수요조사 제출(도 → 한전) : 5. 3.
- 사업대상지 최종 확정(한전 → 도) : 6. 28.
- 공용 전기차 충전소 구축(설계, 시공, 준공) : 7 ~ 12월  
- 설계 및 점용허가(7~8월), 시공(9~10월), 준공 및 서비스 시행(11~12월)

## 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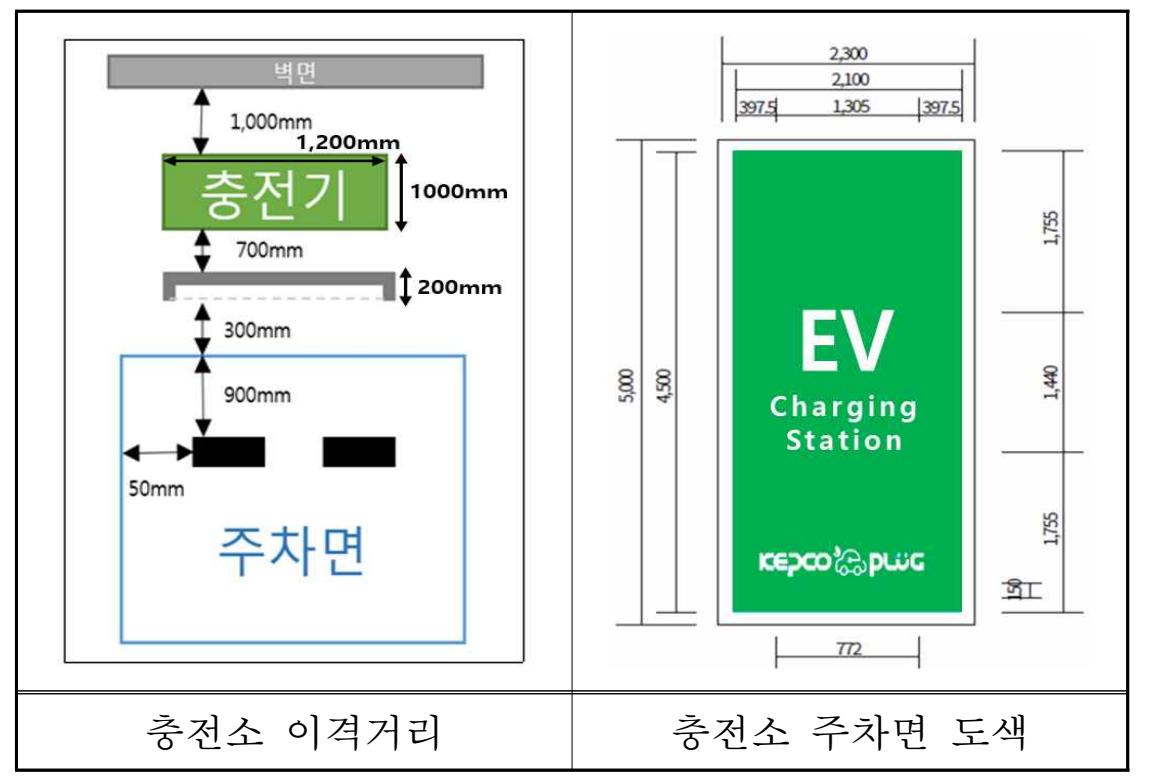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

## 5. 기타

- 충전기 설치예정지 현장사진(도청사)



- 설치기준(한전)



## 불임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